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〔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〕

□ **점검일시 : 2018.07.31 (화)**

□ **점검결과**

◆ **점검자 : 정달영,전용현**

<table>
<tr>
<td rowspan="2">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3-1 동바리 단부는 추락방지 및 낙하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,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</td>
<td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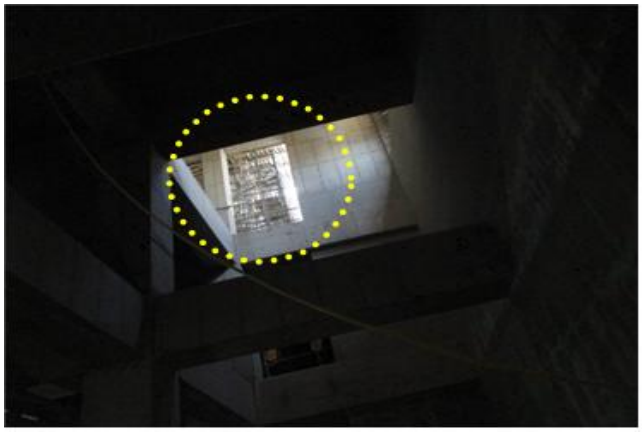 </td>
</tr>
<tr>
<td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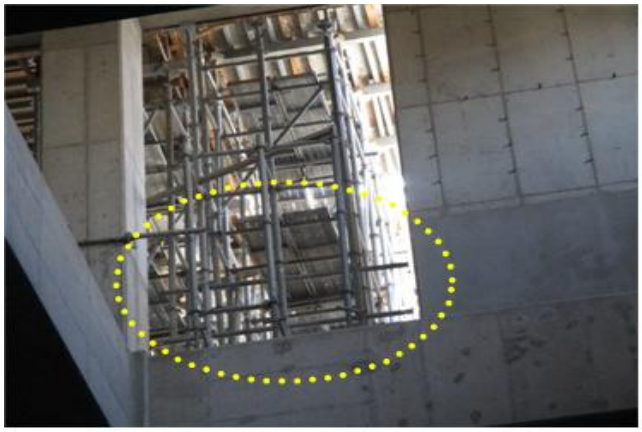 </td>
</tr>
<tr>
<td>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홍보관 측면 서남환경의 기존 시설물 단부는 가설전선 등의 연결을 위하여 근로자가 이동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거나 접근 방지 조치 요망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12
(추락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</td>
<td> </td>
</tr>
</table>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 - 3-1 지하3층 작업비계 상단은 추락방지 난간 및 낙하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요함.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,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	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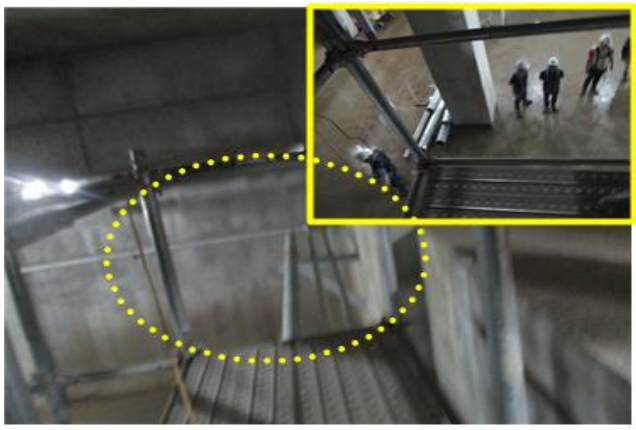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 - 6-3작업장 안전난간 외측 단부에 드럼통이 놓여 있어 낙하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이동 조치 요망.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21 (낙하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	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 - 3-1 지하3층 저류조 수직사다리는 철선을 사용하여 체결하였으나 전용철물 사용 요함. - 3-1 지하3층 저류조 수직사다리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요함.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조(가설통로의 구조), 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, 제 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	

○ 감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 - 상부작업장에서 사용중인 일부 투광등은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 ① 피복이 손상된 전원선 교체 ② 접지선은 녹색 사용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0(투광등)	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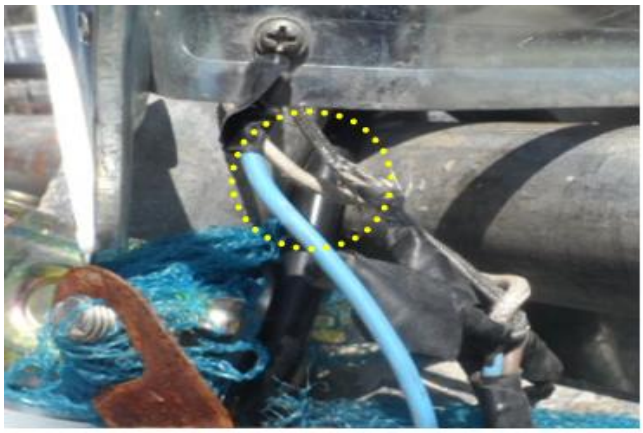
○ 중량물취급 안전(방재시설부) - 상부작업장에서 사용중인 항공마대는 손상 발생 및 철재류를 적재하고 있어 인양중 낙하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완 요망.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14(항공마대)	
○ [모범사례]보건 관리(방재시설부) - 여름철 직사광선 및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어 작업중인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수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별도의 선풍기가 설치된 그늘막 시설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보건증진은 물론 안전한 일터 구현에 이바지함. ※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(보건조치)	